



제 1036 호

2012년 4월 4일 수요일

선 람	기관의 장

규 칙

- 규칙 제7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2

공 고

- 공고 제2012- 520호 분묘개장 공고 5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규 칙

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

2012년 3월 30일

남동구 규칙 제799호

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,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및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

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

☐ 개정 이유

- 계좌이체 예외 대상이었던 운영수당을 계좌원칙으로 변경하고,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의 개선된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

☐ 주요내용

- 계좌이체의 예외사항 중 “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” 을 삭제함.
(제50조제3항 단서)
-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 절차를 개선하여,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 신설
(제77조제6항)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-520호

분 묘 개 장 공 고

도림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분묘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.

2012년 04월 04일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**1. 분묘소재지 및 기수**

소 재 지	기수 (기)	비 고
인천 남동구 도림동 648-2번지	무연분묘 1기	

2. 개장사유

- 도림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시행
- 사업시행지 : 도림동 648-2번지

3. 게시기간

- 2012. 04. 04 ~ 07. 03 (3개월)

4. 개장방법

- 유연분묘 :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
-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허가 후 임의개장

5. 개장 후 안치장소 :

-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-1번지 인천가족공원

6. 신고처

- 인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개발팀 ☎(032) 453-2330